

1. 개정이유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는 SW로 작동을 하는 택시미터로서, 실시간 GPS 신호를 기반으로 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기식 택시미터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문적인 검정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로 위임되지 않는 택시미터 수리·사용 검정 권한 등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관한 것임을 규정(안 제95조의2)
- 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안 제96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1절에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의 택시미터 수리·사용 검정 권한 등)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란 제94조제1항제2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를 말한다.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전기식 택시미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에 따른 전기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으로 한다.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전기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말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권한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란 제94

조제1항제2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를 말한다.

②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제목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전기식 택시미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전기식 택시미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의 제목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를 “전기식 택시미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u><신 설></u>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제95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의 택시미터 수리·사용 검정 권한등)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란 제94조제1항제2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를 말한다.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전기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식 택시미터의 ----- ----- ----- ----- ----- ----- ----- -----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he first row has a small black dot at its center,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writing. The remaining nine rows are completely blank. The entire page is white, providing a clear background for the practice lines.

1. ~ 4. (현행과 같음)

③ -----
 ----- 제1항에 따른 전기식 택
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
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

 --.

1. · 2. (현행과 같음)

제96조의2(국토교통부장관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 권한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미터’란 제94조제1항제2호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를

말한다.

②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